

# 목 차

주주총회소집공고.....	1
주주총회 소집공고.....	2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3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3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3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3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4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	5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5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5
III. 경영참고사항 .....	6
1. 사업의 개요.....	6
가. 업계의 현황 .....	6
나. 회사의 현황 .....	7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9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	9

# 주주총회소집공고

2016년 1월 7일

회 사 명 : 코웨이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동현  
본 점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136-23  
(전 화) 041-850-7850  
(홈페이지)<http://www.coway.co.kr> , <http://www.cowayir.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김상준  
(전 화) 02-2172-1275

# 주주총회 소집공고

(2016년 1차 임시)

당사 정관 제 21조에 의거하여 2016년 1차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6년 1월 22일(금) 오전 10시

2. 장 소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136-23 당사 본점 소재지

###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 4.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사항을 당사, 본·지점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과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 및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5.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사외이사	
				이중식 (출석률:86%)	이준호 (출석률:100%)
1	2015.02.11	- 제 26기(2014.1.1 ~ 2014.12.31) 이익배당 결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제 26기(2014.1.1 ~ 2014.12.31)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 결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2014년 4분기 실적보고의 건	-	-	-
		-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 운영 실태 보고의 건	-	-	-
		- 감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준수 여부 보고의 건	-	-	-
2	2015.03.10	- 제 26기(2014.1.1 ~ 2014.12.31) 정기주주총회 안건 확정건의 건	가결	불참	찬성
		- 대표이사 2014년 인센티브 지급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 주식 수, 2015년 보상 결정의 건	가결	불참	찬성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 결정의 건	가결	불참	찬성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의 건	가결	불참	찬성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가결	불참	찬성
3	2015.03.31	-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4	2015.04.30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 결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지점 설치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2015년 1분기 실적보고의 건	-	-	-
5	2015.07.30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 결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지점 설치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2015년 2분기 실적보고의 건	-	-	-
6	2015.10.28	- 지점 설치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2015년 3분기 실적보고의 건	-	-	-
7	2015.12.10	- 물환경사업부문 물적분할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설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2016년 1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타회사 임원 겸직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1	2명	4,000,000	56,400	28,200	-

주1)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이사 전체 보수한도 총액임.

주2) 상기 지급총액은 2015년 1월 ~ 12월까지 지급한 보수임.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해당사항 없음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 해당사항 없음

## III. 경영참고사항

### 1. 사업의 개요

#### 가. 업계의 현황

##### (1) 산업의 특성

###### - 환경가전사업부문

환경산업은 1960년대 등장한 신종 산업부문으로서 그 정의나 범위분류체계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국가마다 필요에 따라 환경산업의 범위를 다르게 분류하고 있고,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으로 환경산업은 날로 세부업종으로 분화되고 광범위해지는 추세입니다.

정수기는 본래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지표수나 지하수를 정수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국내에서는 1970년대 일부 소수층에 의하여 사용되다 1990년대 역삼투압과 한외여과막을 이용한 정수방식도입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정수기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수기는 각 가정의 건강 필수품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정수기가 보급된 가정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정수기 업체는 약 100여 업체로 추정되며, 주요 업체로는 당사를 비롯하여 청호나이스, 동양매직, 쿠쿠전자, LG전자 등이 있습니다. 정수기 시장이 이렇게 성장한 배경으로 렌탈 마케팅을 도입한 코웨이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8년 4월 업계 최초로 정수기를 렌탈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정수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수기 판매의 패러다임을 바꾸어놓았습니다.

또한, 황사 및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경제개발연구원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해 연간 1만 1,000명이 조기사망하고 최대 10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연구결과 발표 이후 소비자들의 공기청정기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웰빙트렌드와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비데시장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 - 물환경사업부문

물환경사업부문은 재이용, 공공부문 정수 및 하수처리, 산업용 수처리 및 폐수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컨설팅, 설계, 시공, 시운전, 운영에 이르는 수처리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부문입니다.

##### (2) 산업의 성장성

과거 IMF로 인해 정수기 산업의 시장규모가 일시적으로 축소되었으나 이후 경기회복과 함께 수질오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특히 목돈을 들이지 않고 구입할 수 있는 렌탈제품의 등장으로 정수기 시장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청정기의 경우 황사 및 대기오염, 실내오염 등의 문제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있으며, 비데시장은 최근 웰빙트렌드의 영향으로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3) 경쟁요소

국내 정수기 시장과 공기청정기, 비데시장은 가격과 품질의 일반적인 경쟁 뿐 아니라 효율적 영업망 구축과 유지관리서비스 조직의 경쟁력이 중요한 경쟁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군의 특성상 필터교환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서비스가 필요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전국적인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있고, 브랜드인지도가 높은 기업의 제품을 선호하고 있어 메이저 업체 일부가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수기시장은 당사와 청호나이스 등의 업체가 고가제품을 출시하여 고급수요를 창출하고 있으

며, 군소업체들의 보급형제품들이 시판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판매방식에 있어서는 시판보다는 방문판매를 통한 렌탈판매가 시장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소형 주방가전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얼음정수기, 초소형 커피정수기, 스파클링 기능을 접목한 복합적 기능의 정수기가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공기청정기시장은 당사의 주력 판매방식인 방문판매를 통한 렌탈 위주의 시장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경쟁사가 시판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단순 청정기능의 제품에서 최근 가습, 제습등의 복합적 기능의 청정기가 시장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당사를 비롯한 경쟁사 역시 복합기능 청정기 판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내 비데시장은 당사가 2002년부터 최초로 공중파방송과 방문판매 조직을 통한 렌탈판매를 개시하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였습니다. 현재 시장은 방문판매를 통한 렌탈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당사와 경쟁사인 노비타, 동양매직 등의 시판시장으로 양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당사도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에 입점하며 판매채널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시작한 매트리스 사업은 시장에 조기안착 하였으며 순항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일시불 판매뿐 이었던 매트리스 시장에 렌탈판매 방식을 도입함과 동시에 청소, 살균등의 주기적인 관리요소가 추가 되었으며 소비자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매트리스사업은 당사의 정수기, 비데, 청정기를 이어 렌탈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0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진출한 국내 화장품 사업은 주로 고기능성 프리미엄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존 환경가전 사업을 통해 확보한 고객을 기반으로 방문판매를 주력으로한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TV 홈쇼핑 등 채널 다각화를 통하여 매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4) 자원조달상의 특성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제품에 투입되는 핵심부품은 미국, 일본등지에서 전량수입하였으나, 당사의 환경기술연구소와 품질경영연구소, 협력업체등의 끊임없는 기술개발노력으로 인하여 현재는 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대부분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필터 자동생산라인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정수기는 첨단과학의 산물인 초정밀 필터가 그 핵심이므로 경쟁업체들도 기술수준 향상을 통해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나. 회사의 현황

### (1) 영업개황

당사는 한국에서는 최초로 '렌탈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온국민이 경제불황으로 어려웠던 IMF 시기, 고가의 정수기를 선뜻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는 적을수 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과감하게 '렌탈 시스템(임대 제도)'을 도입하였습니다. 렌탈시스템은 소비자 조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가격 부담감'을 해소하고, 정기적인 사후 관리가 생명인 제품에 대해 지속적인 부가 서비스를 제공함이 필수라는 점에 착안,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소비자들의 가격저항감을 낮춘 것은 물론이고, 먹는 물에 대한 불신감에 '서비스 관리'라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또한, 주부사원이 주축이 된 '코디(CODY: Coway-Lady의 약자)'라는 서비스 전문가를 양성해 정기적인 제품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트(HEART)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트 서비스는 위생 서비스 전문성 강화, 법인 및 다중이용시설 전문 서비스 조직 신설, 제품별 맞춤 서비스 키트(kit) 개발, 정확한 서비스 시간 준수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코디는 보통 2개월에 한번 고객을 방문해 렌탈 제품의 정기점검과 일반제품 멤버십 회원관리, 필터교체, 부품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습니다. 또한, 매트리스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의 확대를 위해 매트리스 렌탈, 판매, 관리뿐 아니라 에어컨등의 관리까지 확대하는 토탈홈케어서비스사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홈케어사업의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코디조직과 별도로 '홈케어닥터' 조직을 구성하였으며, 토탈홈케어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조직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품 설치 및 A/S 실시 후 3일 이내에 고객 만족도를 체크하고, 고객의 불만 사항을 One Stop 서비스로 처리할 수 있는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고객만족(CS: Customer Satisfaction)'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 ① 정수기시장 : 약 43%
- ② 공기청정기시장 : 약 34%
- ③ 비데시장 : 약 29%

주1) 시장점유율 자료는 내부 분석 자료임(TNS 3,000명 표본 조사 자료 활용).

주2) 상기 시장점유율은 각 사별 추정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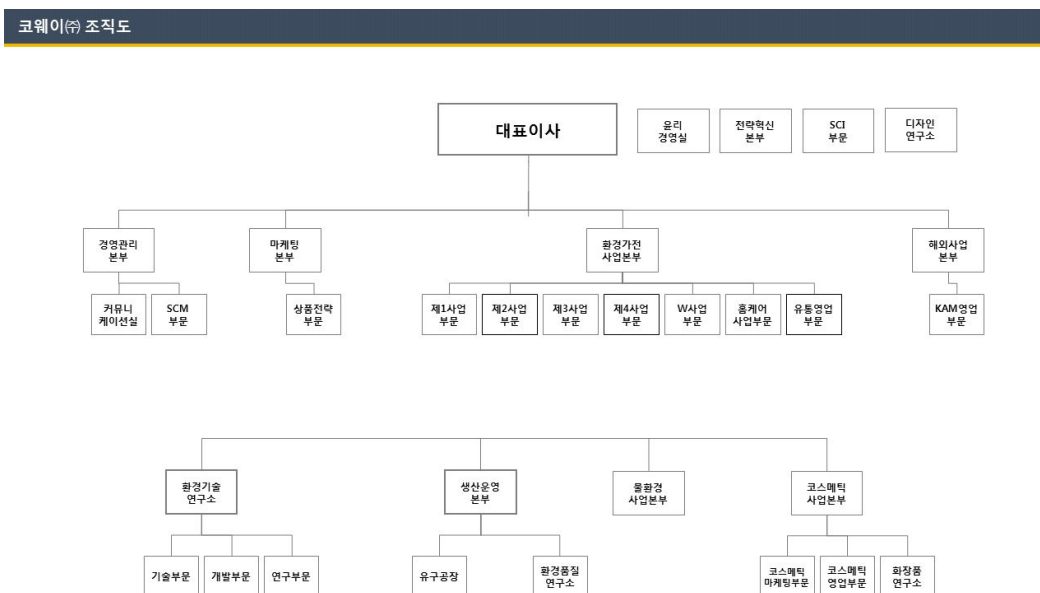
주3) 2014년말 기준임.

(3) 시장의 특성

일반인들의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연수기 등 환경가전 제품에 대한 인식이 정착 되어가고 있으며, 일시불 수요의 창출은 소비자의 소득수준과 내수경기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렌탈판매의 경우 경기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문제, 정부의 정책등에 의해서도 민감하게 영향받는 시장입니다

(4) 조직도

[2016년 1월 7일 현재]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 가. 분할의 목적 및 경위

코웨이주식회사(이하 “분할되는 회사”라 함)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순·물적 분할의 방법에 의한 새로운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라 함)를 설립하고 자신은 존속하기로 하며(이하 분할 후의 존속회사를 “존속회사”라 함), 이에 다음과 같이 분할계획서를 작성한다.

##### - 분할의 목적

(1)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물환경사업부문 분리를 통하여 사업부문별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2) 각 사업부문을 전문화하여 사업부문별로 시장환경 및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3)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강화하며,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운영체제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체제를 정착시킨다.

(4) 물적분할과 함께 분할신설회사 관련 투자 유치 및 분할신설회사의 경쟁력 제고 등을 모색하고, 존속회사의 재무구조 건전화를 도모한다.

#### 나. 분할 계획서

##### 분할 계획서

코웨이주식회사(이하 “분할되는 회사”라 함)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순·물적 분할의 방법에 의한 새로운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라 함)를 설립하고 자신은 존속하기로 하며(이하 분할 후의 존속회사를 “존속회사”라 함), 이에 다음과 같이 분할계획서를 작성한다.

##### 1. 분할의 목적

(1)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물환경사업부문 분리를 통하여 사업부문별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2) 각 사업부문을 전문화하여 사업부문별로 시장환경 및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3)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강화하며,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운영체제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체제를 정착시킨다.

(4) 물적분할과 함께 분할신설회사 관련 투자 유치 및 분할신설회사의 경쟁력 제고 등을 모색하고, 존속회사의 재무구조 건전화를 도모한다.

## 2. 분할의 방법 및 일정

### 가. 분할의 방법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분할되는 회사(존속회사)	코웨이주식회사	환경가전사업부문, 코스메틱사업부문
분할신설회사	코웨이엔텍 주식회사 [가칭]	물환경사업부문

주)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존속회사는 유가증권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위의 표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물환경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이라 함)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여 환경가전사업부문·코스메틱사업부문을 영위하게 된다.

(2) 분할기일은 2016년 2월 29일(예정)로 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회의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책임을 포함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 중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존속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 중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한편, 상법 제530조의9 및 제527조의5 규정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는 채권자 이의 제출을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최고하며, 이의 제출 기간은 1개월 이상 두어 동 규정에 따른 채권자 보호에 대해 만전을 기한다.

(4)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3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되는 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조 제(5)항 내지 제(9)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5)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 사업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월곡동사옥은 존속회사에 귀속된다).

(6)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대상 사업 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 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존속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7)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소송, 과징금, 과태료, 벌금, 조세추징금, 가산세, 가산금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음. 이하 본 조에서 같음),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이 경우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사법상 우발채무의 귀속규정과 달리 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공·사법상우발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원래 공·사법상의 우발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해당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상대 회사가 위와 같이 부담한 공·사법상의 우발채무 이행액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대 회사를 면책해야 한다.

(8)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사법상 권리의 귀속규정과 달리 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상대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

(9)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권리·의무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나. 분할의 일정

구 분	일 자
분할 관련 이사회결의일	2015. 12. 10.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기준일	2015. 12. 25.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총 소집통지	2016. 1. 7.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6. 1. 22.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2016. 1. 26.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만료	2016. 2. 26.
분할기일	2016. 2. 29.
분할보고총회일 및 창립총회일	2016. 3. 2.
분할등기(예정)일	2016. 3. 3.

주1) '주주확정기준일'은 분할계획서 승인의 안건에 대하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일이며,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은 분할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일임.

주2)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3)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 결의·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주4)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분할되는 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임.

3. 분할신설 회사에 관한 사항

(1)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공고의 방법 및 결산기

구분	내용
상호	국문명: 코웨이엔텍 주식회사 영문명: Coway Entech Co.,Ltd.
분할방식	물적분할
목적	첨부4 분할신설회사 정관 참조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76 202호(하월곡동 코업스타클래스)
공고방법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함.
결산기	매년 1월 1일부터 동 매년 12월 31일까지, 단 최초 사업연도는 분할등기일로부터 2016. 12. 31.까지로 함.

주) 상호, 공고방법 등 본건 분할의 내용은 분할계획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수권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구분	내용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00주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액면주식(1주의 금액 5,000원)

(3)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구분	내용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400,000주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수	기명식 보통주 400,000주

주) 상기 발행주식수 및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자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본 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분할되는 회사에 100% 배정함.

(5)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해당없음

(6)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구분	금액
자본금	2,000,000,000원
준비금	8,201,649,107원

주1) 준비금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구성됨

주2) 준비금은 분할기일(2016년 2월 29일)에 이전대상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함.

(7)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되는 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

①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②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2015년 9월 30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분할재무상태표[첨부1]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첨부2]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2016년 2월 29일(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전항에 의한 이전 대상 자산 및 부채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④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재무상태표[첨부1]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첨부2]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⑤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해당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⑥ 이전대상재산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에 관한 권리·의무는 승계 대상 소송 목록[첨부3]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이전대상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⑦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다.

(8)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①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 중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책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만을 부담하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또한 존속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 중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3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되는 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제2조 가. 제(5)항 내지 제(9)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9) 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약력과 최초 사업연도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 등에 관한 사항

① 이사 및 감사의 현황

직명	성명	생년월일	약력	비고
대표이사	정준호	1967년 2월 13일	그린엔텍(주) 대표이사	상근
기타비상무이사	김동현	1970년 6월 14일	코웨이(주) 대표이사	비상근
기타비상무이사	이선용	1965년 12월 28일	코웨이(주) 연구소장	비상근
감사	이재호	1965년 8월 10일	코웨이(주) 경영관리본부장	비상근

주1) 임원들의 임기는 분할등기일로부터 개시됨.

주2) 상기 임원 목록은 잠정안으로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변경될 수 있음.

② 최초 사업연도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

(단위: 백만원)

구분	보수한도액	비고
이 사	600	-
감 사	200	-

주1) 단, 개인별 보수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분할신설회사의 이사회에서 정함

주2)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와 동일하게 함.

(10)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은 [첨부4]와 같다. 다만 [첨부4]의 정관 내용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11) 분할등기일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2016년 3월 3일을 분할등기(예정)일로 한다.

(12) 분할신설회사의 설립방법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다른 주주를 모집하지 않고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승계하는 재산만으로 분할신설회사의 자본을 구성한다.

4. 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1)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및 결산기

구분	내용
상호	국문명: 코웨이주식회사 영문명: Coway Co., Ltd.

목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수기 제조·판매업</li> <li>2. 가정용 기기 제조·판매업</li> <li>3. 수질, 대기 등 환경오염방지 시설업 및 사업시설관리업</li> <li>4. 정수 및 폐기물 처리 설비 제조·판매업 및 사업시설관리업</li> <li>5. 환경관련 기술연구, 대기 및 수질분석, 환경영향평가 대행업</li> <li>6. 수출입 및 무역업</li> <li>7. 부동산 임대·개발·관리·투자·판매업</li> <li>8. 수입·제조한 각종 상품에 대한 렌탈업</li> <li>9. 잡화류 판매업</li> <li>10. 배관자재 제조·판매업</li> <li>11. 의료기기 수출입·제조·판매업</li> <li>12. 방문판매·통신판매·전자상거래업 및 이에 부수한 서비스업</li> <li>13. 시스템 키친 및 가구 제조·판매업</li> <li>14. 위생용 도자기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판매업</li> <li>15. 실내가향제 제조·판매업</li> <li>16. 도어락, 경보시스템 등 각종 보안설비 및 장치 제조·판매업</li> <li>17. 액체 여과기 제조, 판매 및 렌탈임대업</li> <li>18. 헬스기기 수출입·제조·판매업</li> <li>19. 사회교육시설 운영업</li> <li>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li> <li>21. 공기조화장치 제조업</li> <li>22. 경비업</li> <li>23. 소독 및 구충, 일반 청소 등 생활환경개선사업</li> <li>24. 커피, 식품첨가물, 일반 식품 등 수입·가공·판매업</li> <li>25. 커피 또는 차 끓이는 기기 수입·판매업</li> <li>26. 오수/폐수/분뇨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및 사업시설 관리업</li> <li>27. 자가측정 대행업</li> <li>28. 화장품 제조기술 연구개발 및 컨설팅업</li> <li>29. 환경산업 설비, 시설의 설계·시공·감리업</li> <li>30. 산업환경설비 건설업</li> <li>31. 신용카드모집, 보험상품중개, 멤버스카드의 발급 및 이에 수반한 서비스 등 각종 금융상품의 판매·자문업</li> <li>32. 판매·시공·설계한 상품 및 시설 등 또는 기타 상품의 설치·유지·보수·안전</li> <li>규격시험 등의 서비스업</li> <li>33. 통신기기 등의 대리점 또는 위탁판매업</li> <li>34. 시장조사 및 광고업</li> <li>35. 실내건축공사업</li> <li>36. 피부미용기기 수출입·제조·판매업</li> <li>37. 피부미용업</li> <li>38. 전기공사업</li> <li>39. 건강기능식품의 수출입 및 제조·판매업</li> <li>40.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li> <li>41. 화장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업</li> <li>42.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 및 판매업</li> </ol>
----	--



	43.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 및 판매업 44. 화장실 설치형 헬스케어 제품의 제조 및 판매와 이와 부수한 서비스업 45. 수질개선 및 기능성 용수 제조기 제조 및 판매와 임대업 46. 공기질 측정 및 분석서비스업 47. 다중이용시설 공조시스템 제조 및 서비스업 48. 침대 및 침구 관련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렌탈 및 유지관리 서비스업 49. 집안 환경 관련 청소 서비스업 50. 기타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본점소재지	충남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136-23 [서울 사무소] 서울 중구 순화동 7번지 중앙일보빌딩 17층
공고방법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www.coway.co.kr">http://www.coway.co.kr</a> )에 게재함.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 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 신문에 게재함.
결산기	매년 1월 1일부터 동 매년 12월 31일까지,

(2)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본 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서 분할되는 회사의 자본과 준비금은 감소하지 아니함.

(3) 자본감소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4)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분할되는 회사에서 설립되는 회사로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3.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중 “(7)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되는 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 및 「2. 분할의 방법 및 일정」 중 “가. 분할의 방법 (5) 내지 (9)”에 따른다.

(5) 분할 후 발행주식의 총수

분할되는 회사는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므로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후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변동사항은 없음.

(6)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해당사항 없음.

(7)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이 분할계획서는 영업의 변동, 분할되는 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에 따라서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이 분할계획서는 2016년 1월 22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그에 따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시)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 ①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 ② 분할일정
-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 ⑤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 ⑥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⑦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되는 회사의 정관

(2)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3) 회사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4)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분할의 경우로서 해당사항이 없다.

(5) 종업원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2016년 2월 29일(분할기일)자로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다.

2015년 12월 10일

코웨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동현

**첨부목록**

-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
- 【첨부3】 승계대상 소송목록
- 【첨부4】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단위: 천원)

구분	분할전	분할후	
	코웨이 주식회사	코웨이 주식회사	코웨이엔텍 주식회사

		(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자산			
유동자산	607,371,345	602,877,479	7,012,867
현금및현금성자산	90,271,502	89,195,516	1,075,986
매출채권	312,753,420	311,794,470	958,949
금융리스채권	2,655,082	2,655,082	-
기타단기금융자산	17,866,970	15,705,617	4,680,355
기타유동자산	139,427,606	139,130,029	297,577
재고자산	44,396,765	44,396,765	-
비유동자산	1,070,870,950	1,070,238,739	10,833,861
장기매출채권	5,041,154	5,041,154	-
장기금융리스채권	11,123,258	11,123,258	-
기타장기금융자산	50,370,131	50,370,131	-
기타비유동자산	136,968,701	136,968,701	-
매도가능금융자산	1,534,245	1,238,372	295,873
종속기업투자	70,337,471	78,373,121	2,166,000
유형자산	625,966,718	620,340,116	5,626,602
무형자산	146,296,954	143,551,568	2,745,386
투자부동산	23,232,318	23,232,318	-
자산총계	1,678,242,295	1,673,116,218	17,846,728
부채			
유동부채	425,521,463	421,923,845	6,116,620
매입채무	43,462,288	42,073,840	1,388,448
기타단기금융부채	138,463,664	136,696,680	1,862,738
기타유동부채	59,193,226	58,751,040	442,186
단기차입금	142,505,379	142,505,379	2,423,248
당기법인세부채	40,627,625	40,627,625	-
총당부채(유동)	1,269,281	1,269,281	-
비유동부채	71,710,262	70,181,803	1,528,459
기타장기금융부채	10,674,840	10,086,735	588,105
기타비유동부채	5,026,851	5,026,851	-
순확정급여부채	31,556,850	30,923,320	633,530
총당부채(비유동)	306,824	-	306,824
이연법인세부채	24,144,897	24,144,897	-
부채총계	497,231,725	492,105,648	7,645,079
자본			
납입자본	40,662,398	40,662,398	2,000,000
주식발행초과금	97,773,449	97,773,449	8,201,649
이익잉여금	1,113,508,489	1,113,508,489	-

기타자본	(70,933,766)	(70,933,766)	-
자본총계	1,181,010,570	1,181,010,570	10,201,649
부채와자본총계	1,678,242,295	1,673,116,218	17,846,728

주1) 상기 분할전 재무상태표는 2015년 9월 30일 기준 재무상태표를 바탕으로 한 자료이며, 이를 기준으로 분할 후 신설회사에 귀속될 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동 가액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첨부2]

### 승계대상 재산목록

(단위: 천원)

구분		금액	비고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075,986	승계되는 사업부의 현금성자산
	매출채권	958,949	승계되는 사업부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기타단기금융자산	4,680,355	승계되는 사업부 관련 미수금 등 기타채권
	기타유동자산	297,577	승계되는 사업부 관련 선급금 등 기타유동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295,873	승계되는 사업부 관련 매도가능금융자산
	종속기업투자	2,166,000	승계되는 사업부 관련 종속기업투자
	유형자산	5,626,602	승계되는 사업부 관련 유형자산
	무형자산	2,745,386	승계되는 사업부 관련 무형자산
	자산총계	17,846,728	
부채	매입채무	1,388,448	승계되는 사업부에서 발생한 매입채무
	기타단기금융부채	1,862,738	승계되는 사업부에서 발생한 기타금융부채
	기타유동부채	442,186	승계되는 사업부 관련 선수금 등 기타유동부채
	단기차입금	2,423,248	승계되는 사업부에 귀속되는 단기차입금
	기타장기금융부채	588,105	승계되는 사업부관련 장기미지급금등 금융부채
	순확정급여부채	633,530	승계되는 사업부 관련 인원에 관한 확정급여부채
	총당부채	306,824	승계되는 사업부 관련 총당부채
	부채총계	7,645,079	

[첨부3]

### 승계대상 소송목록

주1) 아래 소송, 심판 현황은 2015 12월 10일 기준으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 소송현황

(단위 : 천원)

	사건번호	원고	피고	소송가액	진행경과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가합 561774 계약관계존재확인	(주)세심이엔씨	코웨이(주)	50,000	10/1. 소제기 12/3 변론기일
2					

3					
4					
5					

- 심판청구 현황  
해당사항 없음.

[첨부4]

## 정 관

### 제 1 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의 상호는 코웨이엔텍 주식회사로하며, 영문으로는 Coway Entech Co.,Ltd 라고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환경산업 설비, 시설의 설계·시공·감리업
2. 환경관련 각종 수처리 기계의 제작설치 및 판매업
3. 수질, 대기, 폐기물 등 환경오염방지 설계·제작·설치 시설업 및 사업시설관리업
4. 정수 및 폐기물 처리 설비 제조·판매업 및 사업시설관리업
5. 용수·순수설비 설계·제작·설치
6. 하수·폐수 재활용설비 설계·제작·설치
7. 중수도 재활용설비 설계·제작·설치
8.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9. 정수장비 설계·시공업
10. 오수/폐수/분뇨 및 폐기물처리시설, 축산폐수 설계·시공업 및 사업시설 관리업
11. 산업환경설비 공사 건설업
12. 각종 산업기계의 제작설치 및 판매업
13. 토목건축공사업
14. 기계설비공사업
15.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6. 각종 기술 설계용역업
17. 환경컨설팅업
18. 환경시설관리대행업
19. 환경관련 기술연구, 대기 및 수질분석, 환경영향평가 대행업
20. 수질개선 및 기능성 용수 제조기 제조 및 판매와 임대업
21. 오염지역조사 및 복원사업
22. 액체 여과기 제조, 판매 및 렌탈임대업
23. 판매·시공·설계한 상품 및 시설 등 또는 기타 상품의 설치·유지·보수·안전 규격시험 등의 서비스업
24. 전기공사업
25. 철물 공사업
26. 전기 계장설비의 제작설치 및 판매업
27. 배관자재 제조·판매업

28. 자가측정 대행업
29. 시험 및 측정기 판매업
30. 수출입 및 무역업(종합)
31. 외자재 판매 및 알선업
32. 계량기(수입계량기 포함) 판매업
33.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34.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35. 공기질 측정 및 분석서비스업
36. 다중이용시설 공조시스템 제조 및 서비스업
37. 친환경 청정생산기술사업
38. 부동산 매매·임대·개발·관리·투자·판매업
39. 건설업(주택사업)
40. 조경사업 설계·시공·감리업
41. 실내건축공사업
42. 공해방지시설 인터넷 운영관리
43. 인터넷 전자상거래
44. 에너지,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사업 및 대체에너지사업
45. 도·소매업(일반)
46. 서비스업
47. 강 구조물 제작 및 판매업
48.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매일경제 신문에 게재한다.

## 제 2 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는 설립시에 400,000주의 주식을 발행한다.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며,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9조(신주의 배당 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 ①이 회사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②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③위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거나 제2항의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기존 주주 및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④제1항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⑤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할 경우나 신주 배정으로 인해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배정되거나 귀속되지 아니한 주식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처리된다.

####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 ①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고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②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④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총수는 상법 등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한도까지로 한다.
- ⑤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⑥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로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⑦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 ⑧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2조(명의개서 및 질권등록)

- ①주식을 양수한 자는 회사에 그 주권과 함께 회사에서 정하는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 합병 등 포괄승계에 의해 권리를 승계한 자는 주권을 제시함이 없이 포괄승계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회사에서 정하는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 ②주식에 대한 질권의 등록이나 말소를 원하는 주주는 그 주권과 함께 회사에서 정하는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사 주식의 이전 또는 입질은 취득자 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 제13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14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등을 제13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 3 장 사 채

#### 제16조(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환사채 발행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가액은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 ① 이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 4 장 주주총회

#### 제20조(소집시기)

-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제21조(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2조(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위 통지는 회의 전에 회사의 모든 주주의 동의를 얻어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②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 개최 시기 및 장소를 명기하여야 한다. 주주총회는 모든 주주가 그 회의 출석 여부를 불문하고 만장일치로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회의의 통지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결의할 수 없다.

제23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4조(의장)

- ① 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선임하는 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

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주주의 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제27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20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최 전에 이 회사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주의 법정대리인이 제1항의 대리권을 다른 주주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격증명서도 같이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주는 그 내용이 명시된 1부의 위임장으로써 총회에 관한 포괄대리권을 줄 수 있다.

제29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0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이사회

제31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8명 이내로 한다.

제32조(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이사의 선임은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다른 결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임기가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제34조(이사의 보선)

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1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5조(대표이사의 선임)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수인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 제36조(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7조(이사의 선관주의 및 충실 의무)

이사는 업무수행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38조(이사의 경업금지)

이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승인이 없으면 이 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경업 중에 있음을 알고 이사를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9조(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0조(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41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각 이사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 ④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선임하는 이사가 담당하며,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선임한 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2조(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며, 달리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3조(이사회 의사록)

- ①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4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이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5조(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6장 감 사

제46조(감사의 수와 선임)

- ①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 ②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7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48조(감사의 보선)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 46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9조(감사의 직무)

- ①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⑤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50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51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감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한도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한도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②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7장 계 산

### 제52조(사업연도)

- ①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기말에 결산을 행한다.
- ②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회사의 설립등기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53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 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 승인을 얻은 후,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 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④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⑤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 한다.

- 1. 이익준비금
- 2. 기타의 법정적립금
- 3. 배당금
- 4. 임의적립금
-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제55조(이익배당)

-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56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회사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 임원의 선임)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는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제3조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 및 감사의 보수)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는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

제4조 (분할회사) 분할회사인 코웨이 주식회사는 물적분할을 통해 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2016년 2월 29일 기명날인한다.

**다. 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코웨이주식회사】**

<재 무 상 태 표>

제 26 기            2014.12.31 현재  
제 25 기            2013.12.31 현재

(단위 : 원)

	제 26 기	제 25 기
자산		
비유동자산	1,002,920,167,696	998,582,853,387
기타장기금융자산	51,364,938,528	51,515,383,116
기타비유동자산	90,734,230,545	73,104,407,778
매도가능금융자산	1,534,012,769	1,533,623,750
종속기업투자	70,337,472,398	100,954,208,817
유형자산	617,601,087,655	596,797,789,837
무형자산	147,809,967,203	150,900,236,594
투자부동산	23,538,458,598	23,777,203,495
유동자산	573,108,160,679	642,474,602,289
현금및현금성자산	105,525,742,301	201,278,525,993
매출채권	273,609,656,258	265,871,142,701
기타단기금융자산	21,517,398,778	24,525,764,200
기타유동자산	130,680,507,111	109,925,488,396
재고자산	41,774,856,231	40,873,680,999
매각예정자산	0	0
자산총계	1,576,028,328,375	1,641,057,455,676
자본		
납입자본	40,662,398,000	40,662,398,000

주식발행초과금	97,773,449,148	97,773,449,148
이익잉여금	1,001,790,524,182	890,447,324,553
기타자본구성요소	(81,183,132,108)	(61,538,503,767)
자본총계	1,059,043,239,222	967,344,667,934
부채		
비유동부채	48,957,754,204	36,868,426,474
기타장기금융부채	10,460,233,988	9,035,836,616
기타비유동부채	5,411,988,410	4,564,929,868
순확정급여부채	14,064,774,069	7,023,741,785
총당부채(비유동)	263,774,380	215,691,659
이연법인세부채	18,756,983,357	16,028,226,546
장기차입금	0	0
사채	0	0
파생상품부채(비유동)	0	0
유동부채	468,027,334,949	636,844,361,268
매입채무	46,541,464,777	29,539,554,570
기타단기금융부채	154,539,440,037	162,458,784,914
파생상품부채(유동)	0	6,865,216,289
기타유동부채	57,874,029,009	55,544,667,242
단기차입금	162,803,282,571	172,009,138,942
유동성장기부채	0	30,000,000,000
유동성사채	0	116,083,000,000
당기법인세부채	44,916,692,855	61,055,569,316
총당부채(유동)	1,352,425,700	3,288,429,995
부채총계	516,985,089,153	673,712,787,742
자본과부채총계	1,576,028,328,375	1,641,057,455,676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제 26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제 25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단위 : 원)

	제 26 기	제 25 기
매출액	2,013,640,835,841	1,933,731,417,973
매출원가	673,352,109,794	651,664,989,109
매출총이익	1,340,288,726,047	1,282,066,428,864
판매비와관리비	962,795,689,817	948,850,609,322
영업이익	377,493,036,230	333,215,819,542
기타수익	14,310,225,024	13,993,394,825

기타비용	22,836,562,331	23,054,941,317
금융수익	2,202,047,064	3,870,496,922
금융비용	10,849,424,384	17,604,192,096
종속·관계기업투자손익	(30,616,736,419)	40,128,329,41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29,702,585,184	350,548,907,292
법인세비용	(86,765,758,749)	(97,356,286,478)
당기순이익	242,936,826,435	253,192,620,814
기타포괄손익(세후)	(7,784,518,139)	(575,421,603)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7,980,246,086)	(1,133,571,110)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7,980,246,086)	(1,133,571,11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195,727,947	558,149,507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	0	(3,073,346)
파생상품평가손익	195,727,947	561,222,853
당기총포괄이익	235,152,308,296	252,617,199,211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3,270	3,392
희석주당이익	3,266	3,382

※ 기타 참고사항

물환경사업부문은 재이용, 공공부문 정수 및 하수처리, 산업용 수처리 및 폐수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컨설팅, 설계, 시공, 시운전, 운영에 이르는 수처리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부문입니다.